

무배당 AXA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6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기타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601

(2) 회사는 자동갱신시 보험종목의 명칭에 갱신형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르게 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1) 피보험자의 신체

(2) 이 상품은 당사의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상품(이하, 당사상품이라고 함)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전환용 상품이며,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여 당사상품의 실손의료비담보가 중지 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갱신형)실손의료비	3년	전기납	23세~ (갱신종료 보험나이 ^{주1)} -보험기간)세	월납 연납
제도 성 특별 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	-	-

주1) 갱신종료보험나이 및 갱신주기

원계약 ^{주2)} 의 갱신형 여부	갱신종료 보험나이	보험 기간 ^{주3)}	갱신주기
갱신형	원계약의 갱신종료보험나이	1/2/3년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계약해당일
비갱신형	원계약의 주계약 소멸시기		

주2) 원계약은 18.(4)에 기재된 당사상품을 의미

주3)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보험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주4) 갱신담보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하의 잔여 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가. 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보험료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다른 보험료할인과의 합계액이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 한도로 할인을 적용함

(2) 실손의료비 무사고 할인

가. 적용대상

이 상품의 가입일 이후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유효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의 「무사고판정기간」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계약

나. 무사고 판정기간

① 최초갱신의 경우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회차 갱신이 도래한 경우는 갱신계약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전 1일부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

다. 보험료 할인

회사는 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의 차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동안 무사고할인을 적용함. 다른 보험료할인과의 합계액이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 한도로 할인을 적용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외 기타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함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통약관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며, 갱신보험료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보험연도 개시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함

(2) 보험료 납입방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3) 갱신보험료의 대체납입 및 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부분보험료가 없는 상품으로 계약자적립액에서의 대체납입이 없으며, 갱신 보험료 변경 시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함

(4) 실손의료비 가입에 관한 사항

종합의료비 가입자는 상해의료비 및 질병의료비를 동시가입 불가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써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2)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8. 기타

- (1)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계약자가 해당 상품을 가입하기 전 중지한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아래의 당사상품을 원계약으로 하고, 원계약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상품
(무)늘당신곁에사랑보험0711
(무)늘당신곁에사랑보험0804
(무)늘당신곁에사랑보험0904
(무)다이렉트늘당신곁에사랑보험0910
(무)늘아이곁에사랑보험0711
(무)늘아이곁에사랑보험0804
(무)늘아이곁에사랑보험0904
(무)다이렉트늘아이곁에사랑보험0910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009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4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6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11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810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04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08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10

- (5)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가.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제도성 특별약관

나. 보험의 명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다.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함)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라 함)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함

*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라.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함)를 청약할 수 있음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2) 상기 1)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함)의 피보험자이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인 경우

*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②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함

(예시) 2009. 7. 31. 이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보장종목(단체실손)
상해통원의료비	상해통원
상해입통원의료비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통원의료비	질병통원
질병입통원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입·통원의료비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입원의료비	상해입원
	질병입원
통원의료비	상해통원
	질병통원

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세제,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 특별약관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예시) 2009. 8. 1. 이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보장종목(단체실손)
종합입원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통원(외래)	상해통원(외래)
	질병통원(외래)
종합통원(처방조제비)	상해통원(처방조제비)
	질병통원(처방조제비)

마.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 ① 상기 18.(5).라.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함)를 청약할 수 있음. 다만,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하여야 함
- ②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음
- ③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음

* 주계약의 소멸 : ①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

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 ④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은 재개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므로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음

*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 ⑤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의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함

1) 상기 18.(5).라.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됨)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해지, 재가입 지연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만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

** 단체실손 종료일이란 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을 중지·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

2) 다음 가) 내지 라) 모두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가) 보장종목 나) 보험가입금액
다) 자기부담금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⑥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상기 ⑤의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음.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됨

바. 기타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함
- ②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중지·계약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③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음
- ④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함),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음
- ⑤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함
- ⑥ 18.(5).라.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18.(5).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름
- ⑦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⑧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6)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가.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제도성 특별약관

나. 보험의 명칭: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다.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함)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라 함)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함

*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라.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함)를 청약할 수 있음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유지 중인 경우

2) 상기 1)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현역병으로 입영한 병사(복무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 현역병: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을 의미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해당하지 않음

마.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의 31일 전까지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개예정일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설명하고, 개인실손 재개를 위해 재개일 확정을 요청함
- ② 계약자가 확정된 재개일에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가 이루어짐. 다만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상기 18.(6).라.에 따라 계약자가 중지 청약시 청약서에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재개됨
- ③ 상기 18.(6).라.에 따라 개인실손을 중지한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를 청약할 수 있음
- ④ 상기 ③에 따른 계약자의 재개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재개가 이루어짐
- ⑤ 중지된 개인실손이 특별약관인 경우 그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상기 ①, ②에 따라 중지된 개인실손의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상기 ③에 따른 재개를 청약할 수 없음. 다만, 주계약이 소멸되어도 예외적으로 개인실손 특별약관이 유지되는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의 재개를 청약할 수 있음
 - * 주계약의 소멸 : ①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 ⑥ 재개 시점 기준으로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 보장개시일(재가입인 경우 재가입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회사가 재개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재개됨. 이때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으며, 회사가 판매중지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재개됨
 - *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 ⑦ 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재개 청약을 승낙함
 - 1) 보장종목
 - 2) 보험가입금액
 - 3) 자기부담금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⑧ 회사는 상기 ⑦ 각 호에 대하여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음.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됨

바. 기타 사항

- ① 회사는 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되었던 개인실손이 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함
- ②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가 계약자가 확정된 재개일에 이루어진다는 점,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중지청약시 청약서에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재개된다는 점, 재개 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회사는 납입최고(독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중지된 실손과 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초과할 경우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된다는 점,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 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계약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③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 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음
- ④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함),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음
- ⑤ 조건부 특약의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함
- ⑥ 18.(6).라.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18.(6).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름
- ⑦ 회사는 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⑧ 개인실손 중지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개인실손의 재개 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상함. 다만,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군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 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시 전환 가능

(8)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3. 대상 계약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이하 “납입유예특약”이라 한다.)은 보장성 인보험에 해당하는 계약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특약’ 대상 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4.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해당계약”이라 한다)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한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는 납입유예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시 보험료 납입이 유예될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을 「6개월 또는 12개월」 중 하나의 기간으로 선택해야한다. 이 때, 납입유예기간은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으로 선택 가능하다.

나. ‘가’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납입유예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다)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이 때,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기간 중인 경우

이 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에 약관 제6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구비서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신청 이후 취소한 경우 및 다른 제도성특약을 통해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기본계약이 보험료 납입 면제된 계약 및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의무납입이 종료된 계약

(3)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 단,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4)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자동대출납입 또는 전액자동대체납입이 적용된 계약

(5)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이 적용된 계약

- (6)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납입유예만 신청이 가능하다.
- (7)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해당계약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라 한다)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 시점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단, “납입유예기간 중 갱신형보험의 갱신일이 도래하여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가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일 기준의 갱신형 보험의 요율에서 갱신시 연령증가분만 반영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8)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5.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납입 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계약자적립액 등을 계산한다.
- 나.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과 동일기간(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라 한다)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야 한다. 이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란 납입유예 신청 전의 해당 기간 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 다.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며,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재개한다.
- 라. ‘나’에서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계약 갱신형보험의 갱신일 도래시, 갱신형보험의 납입유예보험료는 갱신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전 보험료,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보험료로 한다.
- 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바. ‘마’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서의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사.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면제 되기 전까지의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아.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납입유예 취소 신청시 납입유예 취소 신청전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자.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차.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이때, 선납 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납입유예 보험료는 선납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카. ‘자’ 및 ‘차’의 경우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6. 기타

- 가.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자, 납입기간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나.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및 납입유예 신청 및 처리로 인해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 라. 회사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각 지급금에 해당하는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유예를 신청할 때 계약자에게 납입유예특약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참조)을 받는다.
- 바. 그 외 기타사항은 대상계약에 준한다.

